

전주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가단138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들

담당변호사 김윤영, 전경령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0., 2016. 9.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33,6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 2016. 8. 10., 2016. 9.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2., 2016. 9.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33,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A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6. 8. 4. 접수 제20263호, 2016. 8. 10. 접수 제20843호, 2016. 9. 28. 접수 제242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소유권을 C로 원상회복하라. 피고 B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6. 7. 14. 접수 제6252호, 2016. 9. 28. 접수 제85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소유권을 C로 원상회복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6. 8. 19.에 전북 부안군 D 토지를 매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6. 10.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어 원고 산하 익산세무서장이 2017. 12. 1. C에게 납부기한 2017. 12.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21,649,910원을 고지 하였으나 C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 C의 체납액은 167,610,210원(가산금 45,960,300원 포함, 이하 C의 미납 세금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C은 피고 A과 2016. 8. 1., 2016. 8. 10., 2016. 9. 20. 증여계약을 각 체결하고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1, 2’라 한다)을 피고 A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2016. 8. 4. 접수 제20263호, 2016. 8. 10. 접수 제20843호, 2016. 9. 28. 접수 제24256호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에 각각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피고 B과 2016. 7. 12., 2016. 9. 20. 증여계약을 각 체결하고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3’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2016. 7. 14. 접수

제6252호, 2016. 9. 28. 접수 제8557호로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에 각각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은 C과 2016. 10. 19. 협의이혼신고를 한 전 배우자이고, 피고 B은 C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의 국세체납액이 167,610,210원에 이르고 최종 납부기한인 2017. 12. 31. 이후 현재까지 무려 3년 8개월이나 시간이 흐른 2021. 6.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단기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익산세무서장은 체납자 C에 대한 수입 정리보류를 2018. 2. 19. 하였으나 수입 정리보류 결의서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은 사실, 그리고 당시 작성된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서에도 채납자의 재산 양도후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취득 및 사업개시여부에 대해 해당없다고 기재된 사실, 원고는 C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파악한 후 2021. 4. 1. C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을 요청하여 확인한 후 피고들이 C의 전 배우자와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달리 C에 대한 정리보류 결의서를 작성한 2018. 2. 19. 무렵에 C과 피고들 사이의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식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6. 7.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이 사건 부동산 1, 2, 3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 1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1의 양도가액인 33,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 2, 3에 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2, 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이 피고 A과 함께 목욕탕을 운영하는 내내 C이 일방적으로 사용한 금전 문제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켜서 피고 A과 C은 이혼에 합의하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1, 2을 피고 A에게 증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C이 이 사건 부동산 3은 E씨 선산으로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피고 A 명의로는 공유지분을 이전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자녀인 피고 B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하였는바,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은 1981. 7. 16. C과 혼인하여 약 25년 동안 김제시 F에서 목욕탕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C은 목욕탕에서 발생하는 월수입의 대부분을 형이나 형수, 조카들에게 증여 또는 대여하거나 주식투자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이에 피고 A은 C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막고자 2001. 9. 25.경 C 명의 부동산(김제시 G, H, I, J 토지, 전북 부안군 D 토지)에 대하여 2001. 9.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C 명의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C과 협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던 2016. 8. 19.경과 2016. 9. 7.경에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를 말소한 점, 피고 A과 C 사이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C의 재산 탕진 외에도 C이 1994년경 피고 A의 배다른 동생을 성폭행한 일이 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 A은 2016. 7. 4. C과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2016호협67)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 하였고, 2016. 8. 23.과 2016. 9. 27. 총 2회의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1, 2, 3 외에 2016. 3. 18. 매도한 전북 임실군 K 임야 매매대금 1,200만 원, 공유지분 27분의 2를 소유하고 있는 김제시 L동 토지(G, H, I, M, J, N, O), C이 단독 소유했던 전북 부안군 D 토지와 전주시 완산구 P 토지가 있었던 점, C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 2 중 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김제시 Q 토지 및 목욕탕

건물의 경우, 피고 A과 C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각자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협의 과정에서 C 명의 공유지분 1/2을 피고 A이 증여받게 되었고 현재 피고 A이 거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 3은 선산으로서 장녀인 피고 B에게 이전등기된 점, 원고는 위 각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여계약은 피고 A과 C의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영희